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75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25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과 일치토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과 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목적 및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.

1) 조례의 근거를 법 및 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함(안 제1조).

2) 영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조정하고,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방식 및 실무위원회 소집기준을 정비함(안 제3조제3항, 제8조 및 제10조).

나.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, 부의장의 지명방법 및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대행을 규정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, 제5조).

다.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의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함(안 제13조).

라. 통합방위회의의 목적·대상·운영에 관한 규정함(안 제14조).

마. 통합방위 지원본부 관련 항목을 통합하고 재정비함.

1) 방위지원본부(현행 제13조)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(현행 제14조)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통합함(안 제15조).

2)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는 운영부서의 잦은 명칭변경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표를 삭제함(안 제15조제3항 및 별표 각각 삭제).

바. 조문의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라 조문 순서를 조정함.

1) 조문 신설: 안 제13조(수당 등)

2) 조문 내용 대체: 안 제14조(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→ 통합방위회의)

3) 조문 순서 조정

가) 현행 제13조 → 안 제15조(현행 제13조 및 제14조 내용 통합)

나) 현행 제15조 및 제16조 → 안 제16조 및 제17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　　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4. 1.~4. 21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22조”를 “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8조, 제18조, 제36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으로 한다”를 “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제5호 중 “서울지방 경찰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의장, 부의장 및 위원”을 “의장 및 위원”으로, “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원이 퇴직·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.
2. 제3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

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의장은 의장이”를 “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회의 등)”을 “(협의회 회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”를 “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제2항 중 “1회 이상 소집하되”를 “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”로 한다.

제13조,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

급할 수 있다.

1.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
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

제15조(종전의 제13조)의 제목 “(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”을 “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된다”를 “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며,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
2.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
3. 화랑훈련, 을지태극연습, 충무훈련 등 훈련 시

제15조(종전의 제13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방위지원본부”를 “지원본부”로 한다.

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며,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·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,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통합방위종합상황실)”을 “(통합방위회의 개최 등)”으로 하

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협의회의 의장은 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(이하 “통합방위회의”라 한다)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

②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
2. 자치구청장
3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선정하는 사람

③ 협의회 의장은 수도방위사령관, 서울특별시경찰청장, 국가정보원의 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.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「통합방위법」 제5조, 제9조,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8조, 제18조, 제36조----------. ----------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,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부시장으로 한다.	② ----------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.	③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서울지방 경찰청장	5. 서울특별시경찰청장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서울지방국세청장	<삭 제>
8. ~ 13. (생 략)	8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서울지방우정청장	<삭 제>
15. ~ 21. (생 략)	15. ~ 21. (현행과 같음)
④ 의장,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.	④ 의장 및 위원---------- 다음 각 호와 같다.
<신 설>	1.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

현 행	개 정 안
	위원이 퇴직·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.
<신 설>	2. 제3항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5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(생략)	제5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----------.
<신 설>	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회의 등) ① (생 략)	제8조(협의회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	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

현 행	개 정 안
집하며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 ③ (생 략) <신 설>	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,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(전자투표를 포함한다)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10조(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등) ① (생 략)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,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. <신 설>	제10조(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----------. 제13조(수당 등)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1. 제3조제3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

현 행	개 정 안
	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
제13조(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된다.	제15조(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----------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라 한다)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(1)부시장이 되며,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<신 설>	1.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
<신 설>	2.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
<신 설>	3. 화랑훈련, 을지태극연습, 충무훈련 등 훈련 시
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,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·국·본부에 설치 운용한다.	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며, 종합상황실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·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,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.
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.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
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	④ ----- 지원본부---------- ----------.
제14조(통합방위종합상황실) ①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.	제14조(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) ① 협의회의 의장은「통합방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(이하 “통합방위회의”라 한다)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
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·경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군·경합동상황실은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둔다.	②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. 자치구청장 3.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선정하는 사람
<신 설>	③ 협의회 의장은 수도방위사령관, 서울특별시경찰청장, 국가정보원의 국장 등 관계 기관의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·제16조 (생 략) [별표] 서울특별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	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. 이 경우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. 제16조·제17조 (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) <삭 제>

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-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신광천(02-2133-4523)